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28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영옥, 김영철, 김춘곤, 김태수, 남창진, 문성호, 박중화, 유만희, 이성배, 임규호 의원(11명)

1. 주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력·자본·영업실적 측면의 제약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초기 실적 부족과 인력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보에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함.

○ 최근 디지털·콘텐츠·지식기반 산업 확대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조달과 연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는 공공재정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경쟁성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및 청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제한된 구조에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초기 실적 부족으로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워 공공시장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콘텐츠·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1인 창조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조달은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